국제입양법안 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26

발의연월일: 2021 10. 12.

발 의 자:김성주·고민정·고용진

김민석 · 김원이 · 남인순

박상혁 · 서영석 · 소병철

신영대 · 양정숙 · 윤준병

이용빈 · 이학영 · 임호선

전용기 • 정춘숙 • 조승래

최종윤 · 최혜영 · 허종식

홍성국 · 홍정민 · 황운하

의원(24인)

제안이유

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며,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993년 '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' 이 채택되어, 우리나라 역시 2013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현재 비준을 준비 중인 단계임.

이에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,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,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.

또한,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하는 등 그간 「민법」의 적용을 받던 입양 중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국가를 이동하는 경우라면 동 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, 아동의 본국과 양부모의 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게 하는 등 국제입양에 있어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제입양이란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,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,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수 있으며,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함(안 제5조).
- 라. 이 법에 따라 국제입양대상이 되는 아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이거나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

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친생자임(안 제 8조).

- 마.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(안 제12조 및 제22조).
- 바.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 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,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함(안 제17조).
- 사.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 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(안 제21조).
- 아.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(안 제27조).
- 자. 국가는 필요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(안 제32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282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.

국제입양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아동의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「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」 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협약"이란 「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」을 말한다.
- 2. "아동"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상 아동을 말한다.
- 3. "출신국"이란 양자가 될 아동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.
- 4. "수령국"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.
- 5. "중앙당국"이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제6 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 또는 협약 비체약국에서 입양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또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.

- 6. "국제입양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을 말한다. 이 때 외국이란 협약 체약국과 협약 비체약국 모두를 포함한다.
 - 가. 외국으로의 입양: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고,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
 - 나. 국내로의 입양: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,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 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
- 7. "결연(結緣)"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8. "본국"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적국을 말한다.
- 9. "아동권리보장원"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.
- 10. "아동통합정보시스템"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- 제3조(국제입양의 원칙) ①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

- 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.
- ② 국제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양자가 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, 국제입양이 아동의 탈취·매매 또는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의 입양을 의뢰·알선 또는 조장·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4조(비영리 운영의 원칙) ①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 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중앙당국) ①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 지부로 한다.
 - ② 중앙당국은 아동을 보호하고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국의 중앙당국과 서로 협력하며 국내의 권한 있는 당국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.
 - ③ 중앙당국은 국내 입양제도, 통계 및 표준서식 등에 대한 정보, 협약 이행에 관한 정보를 타국의 중앙당국과 상호 교환하며 가능한 한 그 이행 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.

- 제6조(국제재판관할)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법에 따른 입양, 입양의 취소 및 파양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.
 - 1. 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 - 2. 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
- 제7조(「민법」 및 「입양특례법」과의 관계) 국제입양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입양특례법」을 적용하고, 「입양특례법」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을 적용한다.

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

제1절 외국으로의 입양

- 제8조(양자가 될 자격 등) ①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어야 한다.
 - 1.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
 - 2.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 에 있어서의 그 친생자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입양특례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될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중 국내에서 양부모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해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해당 아동을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령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입양의 동의 및 승낙)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하여는 「입양특례법」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0조(양부모가 될 자격 등)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「입양특례법」 제15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결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결연을 생략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결연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에 따른 국제입양의 원칙,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,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중앙당국 간 협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연 후 국제입양아동보고서와 제9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, 제11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정보를 수령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제2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수령국 중앙당국을 통해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한다.
 - ③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를 작성하여 수령국 중앙당국에 송부한다.
 - ④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, 수령국 중앙당국에 제1항에 따른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 령국 중앙당국에 알려야 한다. 이 때,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3항 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.
 - 1. 아동에 대한 국내보호가 가능해진 경우

- 2. 친생부모,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
- 3.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4.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의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,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 청하여야 한다.
- ① 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기타 서류,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및 송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가정법원의 허가)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를 갖추어 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받아야 한다. 다만, 양자가 될 아동이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경우로서 「민법」 제882조의2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원하는 양부모는 「민법」 제86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수 있다.
 -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

- 입양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입양 허가 신청 절차,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입양의 효과) 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가정법원 허가 심판의 취지에 따라 「민법」 상 양자 또는 친양자의 지위를 가진다.
- 제15조(입양의 효력발생) ① 이 절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 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한다.
 -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아동의 인도) ① 아동의 부모,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 인용심판 확정 후 양자가 된 아동을 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- 제17조(사후서비스 제공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수

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중앙당국이 작성한 아동 적응보고 서를 수령하고 확인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의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수령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, 법무부장관은 「국적법」에 따라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, 모국어연수,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의 위기 지원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- 1.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
- 2.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, 주거, 생계지원
- 3.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18조(입양정보의 공개 등)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 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

있다. 다만,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, 신청 방법·절차, 결과 통지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입양특례법」 제30조를 준용한다.

제2절 국내로의 입양

- 제19조(양자가 될 자격)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출신국 중앙 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한다.
- 제20조(양부모가 될 자격 등)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「입양특례법」 제15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1조(입양의 신청 등)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에 성실

- 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·은폐·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의 정보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중앙당국 간 협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 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여야 한다. 이 때, 보건복지 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 의사를 철회한 경우
 - 2. 결연된 아동 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
 - 3. 아동이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입국 및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 - 4.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경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알리고, 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

-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, 제1 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입양의 효과) ① 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는 출신국 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.
 -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출신국 법이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하는 입양인 경우에도 친양자입양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.
 - 1. 양부모가 친양자입양 허가를 청구한 경우
 - 2.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가 기존 법적 친자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
- 제24조(입양의 효력발생) 이 절에 따른 입양은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제 31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,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또는 입양증서를 첨부하여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사후서비스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출신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의 아동 적응 보고서 작성 외에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당국과 협 의하여 요청에 응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위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6조(입양의 취소 및 파양) ① 이 절에 따른 아동의 입양의 취소 및 파양에 관하여는 「입양특례법」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아동이 「민법」 상 양자(친양자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)인 경우에는 「민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이 청구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 - ③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, 입양의 동기, 양부모의 양육능력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.

제3장 보칙

제27조(보호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

- 이 취소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었거나 해당 아동이 파양된 경우, 또는 출신국의 입양전제위탁 결정 후 입국한 아동에 대해 입양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통보하고, 해당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28조(아동통합정보시스템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,「입양특례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,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「아동복지법」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은

-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입력·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9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경찰관서, 공공기관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(이하 "아동복지서설"이라 한다),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- 제30조(비밀유지의 의무) 아동권리보장원, 아동복지시설, 「입양특례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이 법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, 「입양특례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다만, 제19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31조(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약 체약국 과 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입양에 대하여 협약 제2

- 3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구체적 내용,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2조(외국과의 협력) ① 국가는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3조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,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 받은 자를 지휘·감독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34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4장 벌칙

- 제35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입양특례법」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 을 약속한 자
 - 2. 제13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출신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
 - 3.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
 - ②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3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「입양특례법」 또는 「민법」에 따라 입양 허가 심판의 청구가 있었던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각 종전의 「입양특례법」 또는 「민법」의 규정을 따른다.